



노인인권 보호지침

강 사 | 한 연 속

[학습목표]

1. 노인인권보호 목적과 권리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2.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3.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노인인권보호 목적과 권리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요양기관 평가 기준]

기준 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평가지침7 '인적자원 개발' 부분
2. 급여제공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3. 기록, 현장검증, 면담으로 평가

1. 노인인권보호 목적과 권리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1) 노인인권이란?

-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③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에는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 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2) 노인인권보호의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1. 노인인권보호 목적과 권리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2)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1. 노인인권보호 목적과 권리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2)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 노인인권보호 목적과 권리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시설에서의 노인의 권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인권보호 목적과 권리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시설에서의 노인의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1) 노인학대의 신고

(1)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1577-1389)

〈표 1-1〉 신고자의 유형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출처 : 법제처 (www.moleg.go.kr)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1) 학대사례 분류

①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② 응급 사례

-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1) 학대사례 분류

③ 비응급 사례

-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④ 잠재적 사례

-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2) 일반사례

- 신고접수 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노인복지법 제1조의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2) 일반사례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발생되었음
- ② 복합성 :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노인학대는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
- ④ 은폐성 :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노인학대 유형	내용	예시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먹 등으로 때린다.-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으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노인학대 유형	내용	예시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웃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노인학대 유형	내용	예시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care service)을 제공하지 않는다.-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노인학대 유형	내용	예시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중복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4) 노인학대 방지법 및 종사자 인지시 행동

- 노인학대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법 제39조6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하였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 직군) 노인 학대를 인지한 경우**
 -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및 신고한다.
 -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 대처해야 한다.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1) 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운영 유의점

- ① 시설(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전문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은 시설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⑥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실시 어르신의 문제행동 시 촉탁의 문의
- ⑧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 노인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2)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역할

- ①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
(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확보)
- 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해결
- ③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 ④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장 마련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2)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역할

- ①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
(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확보)
- 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해결
- ③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 ④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장 마련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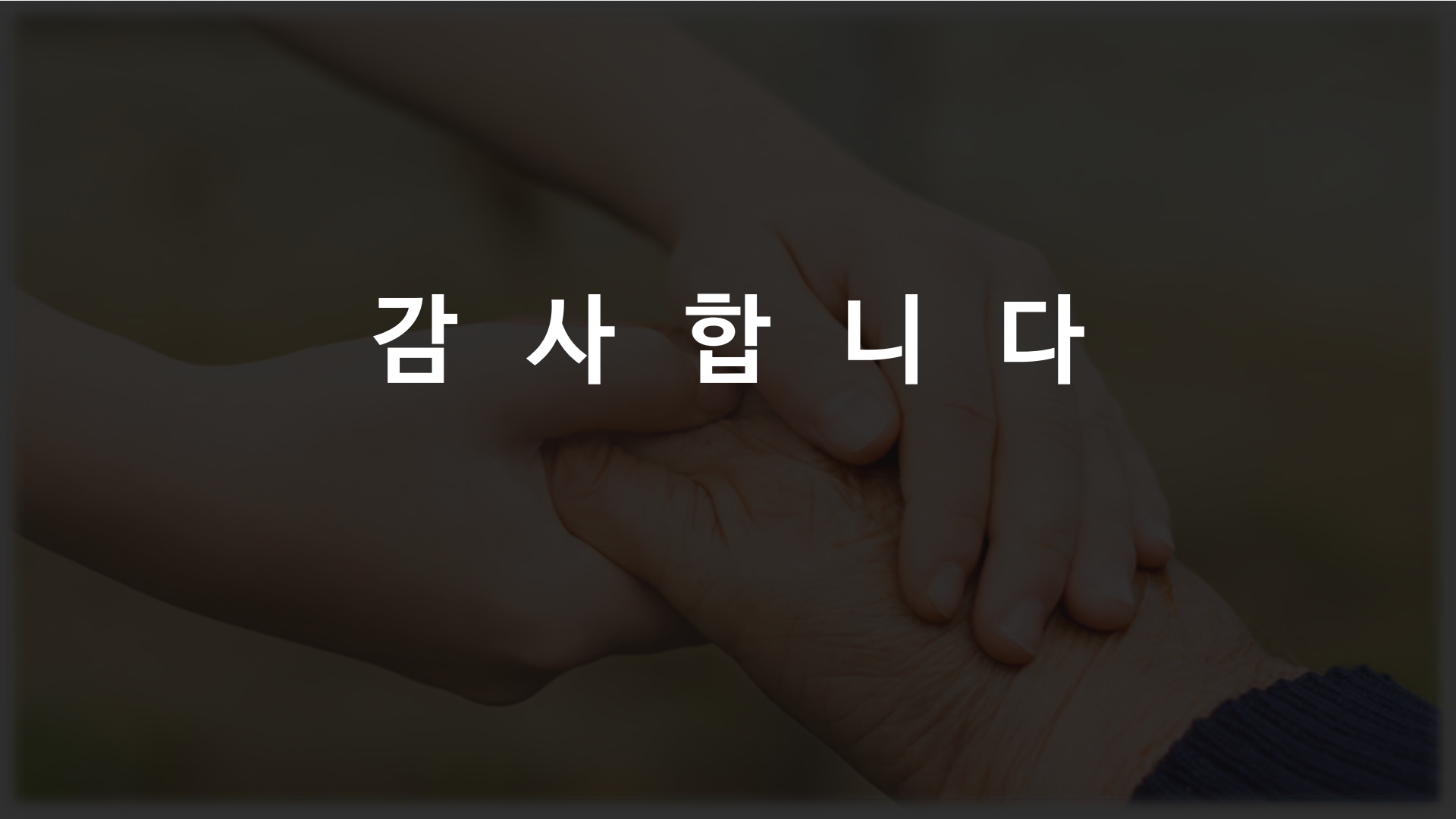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교육

3) 노인학대 대응방법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감 사 합 니 다